

울산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가단226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나1034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1가단2263 판결

전문

원고A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를

담당변호사 김석환

변론 종결 2021. 11. 5.

판결 선고 2021. 12. 17.

주문

1.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447,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2021. 12. 17.까지는 연 5%, 2021. 12. 1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532,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9.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다가 2009. 2. 27. 아들인 E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E은 2019. 5. 7.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06. 4. 15.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119.96m²(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4.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의 배우자인 C은 2009. 4. 15. D의 아들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4.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은 2009. 6.경 및 2009. 7.경 C에게, F과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아무런 권한 없는 자와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자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라. E과 그 형제자매들 사이에 2009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10여 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아버지인 D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형사상 고발 등의 분쟁이 있었다.

마. E은 2019. 4. 30.경 C이 2009. 4. 15.부터 이 사건 상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함에 따른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9. 5. 1.경 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또한 E은 2019. 6. 10.경 피고가 2009. 4. 15.부터 이 사건 상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함에 따른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9. 7. 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바. 1)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7043호로 C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2009. 4. 15.부터 이 사건 상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관련 소송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료상당액 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9. 4. 15. ~ 2010. 4. 14.	8,903,309	741,940
2010. 4. 15. ~ 2011. 4. 14.	8,937,907	744,820
2011. 4. 15. ~ 2012. 4. 14.	8,831,953	735,990
2012. 4. 15. ~ 2013. 4. 14.	9,147,441	762,280
2013. 4. 15. ~ 2014. 4. 14.	9,673,611	806,130
2014. 4. 15. ~ 2015. 4. 14.	9,988,952	832,410
2015. 4. 15. ~ 2016. 4. 14.	10,409,579	867,460
2016. 4. 15. ~ 2017. 4. 14.	10,947,538	912,290
2017. 4. 15. ~ 2018. 4. 14.	11,368,328	947,360
2018. 4. 15. ~ 2019. 4. 14.	11,964,645	997,050
2019. 4. 15. ~ 2020. 4. 14.	12,560,843	1,046,730

3) 관련 소송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은 2020. 8.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C은 E 및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106,971,889원(관련 소송 소 제기일인 2019. 6. 7.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인 2009. 6. 7.부터 2019. 9. 30.까지의 임료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9. 10. 1.부터 위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46,7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와 C은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G횃집'이라는 상호로 대표자를 '피고'로 하여 식당을 운영하다가 2009. 5. 1.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9. 5. 9. 대표자를 'C'으로 하여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한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20. 9. 23. 폐업신고를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이후 피고와 C은 울산 남구 H, 1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G횃집'이라는 상호로 대표자를 '피고'로 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1)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함께 이 사건 상가를 점유,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E 및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 없는 점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3. 5.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3.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한 2020. 9. 23.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한 것은 C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주방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2006. 4. 15.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피고인 점, 이 사건 상가에서 피고 명의로 'G횃집'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다가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하고 대표자 명의만 배우자인 C으로 변경된 점, C 명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과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인이 C이고 2009. 5. 9.부터 2020. 9. 23.까지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명의인이 C이라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점유, 사용한 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당이득금의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1. 3. 6.부터 2020. 9. 23.까지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은 위 부동산의 임료상당액으로서 그 금액은 관련 소송에서 이루어진 감정축탁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2020. 4. 15. 이후의 임료는 2020. 4. 14.까지의 임료상당액과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이를 계산하면 2011. 3. 6.부터 2011. 4. 14.까지는 979,496원(= 연간 임료 8,937,907원×40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1. 4. 15.부터 2020. 4. 14.까지는 위

1.바.의 2)항 기재 표의 해당 기간별 임료상당액 합계 94,892,890원, 2020. 4. 15.부터 2020. 9. 23.까지는 5,574,949원(= 연간 임료 12,560,843원×162일/365일)인바, 총합계는 101,447,335원이 된다(원고는 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동일 기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면서도 계산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그 금액을 102,532,077원으로 산정하여 구하고 있으나, 이는 계산의 오류로 보이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1,447,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1. 12. 18.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강경숙

별지